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6-12

# 서 울 고 등 법 원

## 제 8 행 정 부

## 판 결

| | |
|---|---|
| 사 건 | 2018누734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|
| 원고, 항소인 | A |
| | [redacted] |
| 피고, 피항소인 | 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 |
| 제 1 심 판 결 | 서울행정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구합58226 판결 |
| 변 론 종 결 | 2019. 4. 12. |
| 판 결 선 고 | 2019. 5. 3. |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7. 7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3,675,800원, 지방교육세 29,200원, 농어촌특별세 1,352,980원[1], 가산세 2,924,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1)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항소장 및 제1심 판결 청구취지의 농어촌특별세 1,350,980원은 오기로 보인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6-12

## 이 유

1.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

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5, 6행의 "제16조 제3항은"을 "제16조 제1항 제3호는"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재영

판사 이승철

판사 김제욱